

2026년도 제75기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2026년도 제75기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6일

경찰대학장

1 선발 분야 및 인원

분야	계	일반	세무회계	사이버
인원(명)	50	40	5	5

※ 남녀 구분 없이 통합 선발

2 시험 절차 및 일정

시험 절차 (합격결정 비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 기간	합격자발표
원서 접수		5. 26.(월) 09:00 ~ 6. 5.(목) 18:00 / 11일간		
1차시험 (50%)	필기시험	5. 26.(월) 경찰청 원서접수사이트 경찰대학 홈페이지	7. 26.(토)	7. 31.(목) 17:00
2차시험 (25%)	신체·체력· 적성검사	7. 31.(목) 경찰청 원서접수사이트 경찰대학 홈페이지	9. 1.(월) ~ 9. 12.(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응시자격 등 심사	해당 없음	10. 1.(수) ~ 11. 18.(화)	
4차시험 (25%)	면접시험	11. 19.(수) 경찰청 원서접수사이트 경찰대학 홈페이지	11. 26.(수) ~ 12. 5.(금)	12. 11.(목) 17:00

주요 안내사항

-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 공지 예정입니다.
- ▶ **원서접수**는 2025. 5. 26.(월) ~ 6. 5.(목) 18시 정각까지 결제완료 및 접수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운전면허증 보유기준일이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마지막 날)로 변경 되었으며, **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소지자도 응시 가능합니다.**
- ▶ 「경찰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되어,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가** 추가되었습니다.
- ▶ 신체검사서의 인정 유효기간이 신체검사 **‘판정일로부터 4월’**로 변경됩니다.
- ▶ 채용시험 마약검사가 대표 마약 6종 검사로 확대됨에 따라 **개선된 마약 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만**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가 가능합니다.
- ▶ 색각이상자 채용 응시자격 요건이 완화되어 **녹색약과 청색약은 색맹이 아닌 경우 정도에 관계없이 응시가** 가능합니다.
- ▶ 가산점제도가 변경되어 체력검사 단계에서 **무도 분야 자격증(단증) 2·3단과 4단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차등하여**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 ▶ 기존 면접시험(집단·개별) 방식이 개선되어 **개별면접으로 통합되며** 면접 평가 요소가 2개 항목 → **5개 항목**으로 변경됩니다.
- ▶ 일정은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최종합격자 입교일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안내 예정입니다.

3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5. 5. 26.(월) ~ 6. 5.(목) 18:00 <11일간>

- 로그인 시간에 관계없이 접수마감일 18시 정각까지 결제완료 및 접수번호 확인해야 원서 접수 인정(마감시간 이후에는 내용 수정 및 접수 불가능)

나. 접수방법: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police.go.kr>)로 접수

다. 접수취소 및 응시표 출력기간

접수 취소 기간	응시표 출력 기간
7. 11.(금) 09:00 ~ 7. 22.(화) 18:00	7. 11.(금) 09:00 ~ 12. 31.(수) 18:00

※ 접수 취소 시 응시수수료 반환(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

라. 응시수수료: 경사 이상 7,000원(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4조)

- 응시수수료 이외에 결제수수료(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소요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 반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 응시원서 제출일 기준으로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이며, 원서접수 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원서접수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작성 후 스캔하여 업로드 제출

마. 응시원서 사진(원서접수 기간 이후 사진 교체 불가)

-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cm×4cm)을 업로드

※ △배경 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스냅사진
△얼굴이 잘리거나 작아서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등록 불가

4 가산점 등

구 분	가산 기준
취업지원대상자*	시험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부여
체력검사 무도분야 자격증**	최종합격자 결정 시 100점 만점 기준으로 무도분야 자격증(단증)을 제출한 경우 2·3단은 0.5점, 4단 이상은 1점을 부여
<p>*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이며, 자세한 내용은 취업지원 대상자 유의사항 참조</p> <p>** 체력검사 무도분야 자격증(단증)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 [붙임 14]</p>	

5 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 기준점수(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25. 7. 25.)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등급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획득 시기와 상관없이 인정하며 유효기간 없이 인정
- 성적제출 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성명, 생년월일, 한국사 인증번호 등을 정확히 표기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 기간[2025. 7. 21.(월) 09:00 ~ 7. 25.(금) 18:00] 내에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등록

※ 추가 등록 기간 내 성적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리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기준 점수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 토플 PBT방식 폐지에 따라 '25. 1. 1.부터 PBT 평가점수 제외	IBT 58점 이상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625점 이상
텡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280점 이상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Level 2의 50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	520점 이상
토셀 (TOSEL)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	Advanced 550점 이상

•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 2020.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예정일 전날 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경우 TOEFL은 응시국가 제한 없이 인정, TOEIC은 일본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 G-TELP는 미국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 TOSEL은 베트남·미얀마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 확인 불가

- 따라서,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 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등록 필수

※ 토익 등 검정시험 자체의 유효기간이 만료했고, 사전등록 하지 않은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사전등록 관련 안내

□ 사전등록 방법

- 토익(TOEIC), 텡스(TEPS), 지텔프(G-TELP):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http://gosi.police.go.kr>)에 사전등록
- 토플(TOEFL), 플렉스(FLEX), 토셀(TOSEL): eldksky@police.go.kr로 성적표를 이메일 발송 후 경찰대학 인재선발계(041-968-2555)로 연락 필요

□ 사전등록 시한

- 토익(TOEIC), 텡스(TEPS), 지텔프(G-TELP): 유효기간(2년) 만료 전
- 토플(TOEFL), 플렉스(FLEX), 토셀(TOSEL): 유효기간(2년) 만료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성적표를 eldksky@police.go.kr로 발송한 경우

□ 사전등록 유의사항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사전등록 시 해당 영어능력검정 시험명, 등록번호, 성명, 시험일자, 점수 등을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함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 한 경우

-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 고시센터에 사전등록이 된 경우에는 성적 인정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 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매 시험마다 신규출제 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 성적제출 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 기간[2025. 7. 21.(월) 09:00~7. 25.(금) 18:00] 내에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등록

※ 추가 등록기간 내 성적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리

6 응시 자격요건

가. 응시 결격사유 등

※ [붙임 1] 경찰공무원 응시결격사유 등 참조

-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응시자 중 사면·복권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스토킹 범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 추가('25. 1. 7.시행)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에 따른 시험 부정행위로 '응시 자격이 제한당한 자'

나. 응시 연령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 제1항 <별표 1의3>

응시 연령	해당 생년월일
21세 이상 ~ 40세 이하	1984. 1. 1. ~ 2004. 12. 31.
군복무*기간 △ 1년 미만은 1세 △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 2년 이상은 3세 각각 연장 * 군복무: 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 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군복무로 인해 응시연령을 초과하는 응시자는 서류제출일에 병적증명서 제출	

다. 신체조건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42조2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4항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경찰채용 신체검사 세부 기준'에 부합한 자 [붙임 2·3]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

라.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보유

-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응시 가능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마지막 날: '25. 12. 5.)까지 유효*한 운전면허 보유 필요
- * 신규취득의 경우 합격일이 아닌 면허증에 기재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함

마. 병역: 제한 없음

바. 무도단증 및 운전면허 유효기간

종 류	기 준 일
무도단증	신체·체력·적성검사 종료일: '25. 9. 12.(금)
운전면허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마지막 날): '25. 12. 5.(금)

7 시험 단계별 평가 방법 등

가. 1차 시험(필기시험)

- (과목 및 배점) 총 18개 과목(객관식 4지 선다형, 과목당 40문항)
- ※ 분야별 필기시험 5과목(공통2, 필수2, 선택1), 총 400점 만점

구분	일반		세무회계		사이버	
	과목	배점(점)	과목	배점(점)	과목	배점(점)
공통 (2)	형사법	120	형사법	120	형사법	120
	헌법	60	헌법	60	헌법	60
필수 (2)	경찰학	120	세법개론	80	정보보호론	80
	범죄학	60	회계학	80	시스템네트워크보안	80
선택 (택1)	행정법	40	상법총칙	60	데이터베이스론	60
	행정학	40	경제학	60	통신이론	60
	민법총칙	40	통계학	60	소프트웨어공학	60
			재정학	60		
검정제	한국사 · 영어					

※ 한국사·영어 과목은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으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합격한 것으로 보되, 필기시험 성적산정에는 미반영

• 시험 범위 및 출제 비율

과목	출제 비율
경찰학	경찰행정법(경찰행정법의 기초, 경찰조직법, 경찰작용법, 경찰구제법 등) 35% 내외, 경찰학의 기초이론 30% 내외, 경찰행정학 15%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 내외
형사법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증거 각 15% 내외)
헌법	기본권 총론·각론 80% 내외, 헌법총론·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20% 내외
범죄학	범죄원인론 50% 내외, 범죄대책론 30% 내외, 범죄유형론·범죄학 일반 각 10% 내외

※ 위 4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전 범위에서 출제

• 시간표 및 필기시험 관련 사항(응시자는 08:30까지 입실 완료)

구분	시험시간	분야	시험 과목
1교시 (80분)	09:10 ~10:30	공통	▶ 공통: 형사법, 헌법
2교시 (120분)	11:00 ~13:00	일반	▶ 필수: 경찰학, 범죄학 ▶ 선택: 행정법, 행정학, 민법총칙 中 택1
		세무회계	▶ 필수: 세법개론, 회계학 ▶ 선택: 상법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 中 택1
		사이버	▶ 필수: 정보보호론, 시스템·네트워크보안 ▶ 선택: 데이터베이스론, 통신이론, 소프트웨어공학 中 택1

- (답안공개) 문제 및 가답안은 2025. 7. 26.(토) 필기시험 종료 후, 확정 답안은 2025. 7. 28.(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공개

- (이의제기) 2025. 7. 26.(토) 필기시험 종료 후 ~ 7. 27.(일) 18:00 까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필기시험 이의제기」 코너에 접수

※ 이의제기는 시험 응시자만 가능

- (성적공개) 2025. 8. 12.(화) 18:00 ~ 12. 31.(수)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개인별 성적 확인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3조 제2항

- (선발기준) 한국사·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또는 기준등급 이상을 취득하고, 한국사·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쏠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예정 인원

- (일반) 최종합격자 40명 → 필기합격자 72명(180%)

- (세무회계·사이버) 최종합격자 각 5명 → 필기합격자 각 10명

최종 선발인원	150명이상	100~149명	50~99명	6~49명	5명	4명	3명	2명	1명
필기시험 합격인원	150%	160%	170%	180%	10명	9명	8명	6명	3명

※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양성평등채용목표제 관련 성별 채용목표인원 초과 선발)

● 1차 시험(필기시험)에서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 1차 시험 합격자로 결정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아래 서류제출, 세부사항은 별도 공지

제출서류	비고
△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무도 단증 사본 등	경찰대학 제출
△ 신원진술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상세)	인터넷*으로 제출

* '25년부터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중 신원조사와 관련된 서류는 '신원조사 업무포털'(인터넷 사이트)로 제출(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일정 및 세부사항 안내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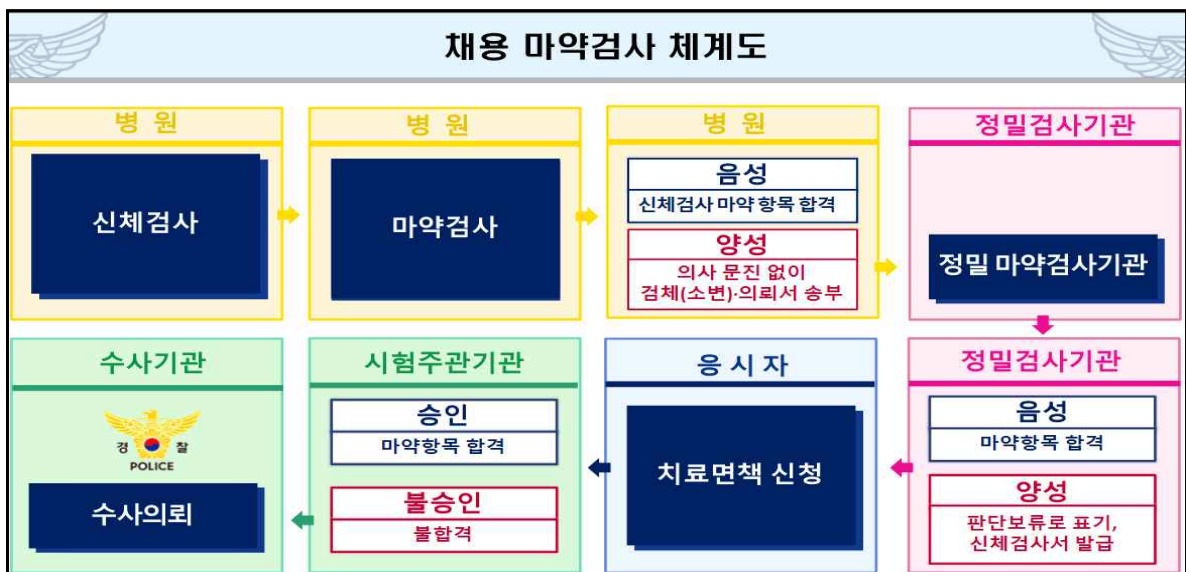
나. 2차 시험(신체·체력·적성검사)

시험유형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신체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중 개선된 마약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유효하게 발급받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평가 ※ [붙임 4]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와 '신체검사 기준표', '신체검사 세부 기준' 모두 적격 시 합격
체력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식 체력검사 ※ [붙임 6] 순환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참조 ▶ 도핑테스트 검사 ※ 응시자의 5% 이내를 무작위 선정하여 금지약물 복용 여부 검사[붙임 7·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주시간이 4분 40초 이하인 '우수 등급' 합격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 다만, 어느 한 성을 초과하여 합격시키는 경우에는 '보통 등급'에 속하는 해당 성의 응시자 중 완주 시간에 따른 선순위자를 우수 등급을 받은 인원과 합산한 후 해당 성의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 </div>
적성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격·인재상·경찰윤리 검사 (총 450문항, 1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격·불합격 여부는 판정하지 않고, 검사결과는 면접시험 위원에게 참고 자료로만 제공

- (신체검사 병원)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중 개선된 마약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만 실시 가능

※ [붙임 5]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가능 병원 참조

- (마약검사 방법) 기준과 같이 병원에서 응시자의 소변을 제출받아 실시



※ [붙임 10·11] 마약류 정밀검사 안내문 및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참조

- (신체검사서 유효기간) 신체검사서에 기재된 판정일로부터 4월까지이며, 신체·체력·적성검사 종료일(9.12.)까지 유효해야 함
- (색각이상자) 녹색약과 청색약은 색맹이 아닌 경우 색약정도에 관계 없이 응시 가능하지만 적색약은 기존과 같이 약도 색약만 응시 가능
 - ※ [붙임 12] 경찰공무원 색각 관련 정밀검사 병원 안내문 참조
- (체력검사 가산점) 최종합격자 결정 시 100점 만점 기준 무도 분야 자격증(단증)을 보유한 경우 2·3단은 0.5점, 4단 이상은 1점을 가산
 - ※ [붙임13] 무도단증 가산점 기준표
 - 가산점은 1개의 무도 분야 최대 1점만 인정하며, 2개 이상의 다른 무도 분야 단증을 제출하더라도 가장 높은 단증만 인정
 - ※ [붙임 14] 체력검사 가산점 인정 무도 단체 참조 / 특별단증·명예단증 불인정
 - 가산점 충족 여부 기준일은 신체·체력·적성검사 종료일(9.12.)

다. 3차 시험(응시자격요건 등 심사)

- (시험방법) 제출서류 검증을 통해 응시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
- (합격자 결정)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진위 여부가 확인되고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적격자로 판정하여 합격자로 결정

라. 4차 시험(면접시험)

- (시험방법) 기존 ‘집단+개별면접’ 2단계 진행방식으로 운영되던 면접시험이 개선되어 '25년 채용시험부터는 개별면접만 실시

【 면접시험 진행 절차 흐름도 】

면 접 준 비		면 접 실 시		
응시자 교육	① 발표준비	② 발표면접		③ 경험·인성면접
		발표	질의·응답	질의·응답
	20분	3분	7분	15분

- (합격자 결정)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결정

※ 단,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를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

구 분	평 가 요 소	배 점
발표면접	① 상황판단·문제해결 능력 ② 의사소통 능력	각 항목당 10점 (총점 50점)
경험·인성면접	③ 경찰윤리의식(공정, 사명감, 청렴성) ④ 성실성·책임감 ⑤ 협업 역량	

마.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무도분야 자격증 1% 포함), 면접시험 25%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② 필기시험 성적 ③ 면접시험 성적 ④ 체력검사 성적순으로 선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위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

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적용분야)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분야
※ 일반·세무회계·사이버 모두 해당
- (채용목표)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로 인원수 계산 시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15%를 곱한 인원수로 하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 [붙임 15]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관련 규정 참조

8 임용 관련 사항

가. 공통사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과락이 아닌 자 중 최종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일부만을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인원 중 일부는 입교 대기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임용 시 인력 수급에 따라 **임용 대기 발생 가능**
- 신임교육 전 ① 병역복무 ② 학업의 계속 ③ 6개월 이상 장기요양 질병 ④ 임신·출산 ⑤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유예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신임교육기간 중 적정 보수를 지급하고, **최초 임용 후 다른 시·도 경찰청으로 10년간 전보를 제한**
- 임용유예·채용인원 미달 등이 발생한 경우 결원·치안수요 등에 따라 **일부 지역에 미배치될 수 있음**
 - ※ 임용유예 등의 경우, 교육완료 후 시·도청 배치는 최초 시·도경찰청 배정 계획에 따라 결원 시·도경찰청에 배치
- 최종합격자는 경찰대학에서 1년간 교육과정 수료 후 경위로 임용
- 임용 시 최초 근무지역은 원서접수 시 선택한 응시지구와 관계없이 교육과정 성적 등 별도의 방법으로 지정
- 임용 후 3년 6개월간 필수현장보직(지구대 또는 파출소 6개월, 경찰서 수사부서 경제팀 3년)에서 근무

나. 세무회계, 사이버

- 세무회계, 사이버 분야는 필수현장보직 기간 만료 후 3년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부서에서 근무(「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32조 제1항 및 제35조)
 - 1) 세무·회계: 수사, 재정, 감사 관련 부서
 - 2) 사이버: 사이버, 수사, 정보통신 관련 부서

응시자 참고 및 유의사항

공통 유의사항

- 가.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및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체력검사 도핑테스트 비정상 분석 결과자 등)를 한 경우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에 따라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자격이 제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체력검사에 인정되는 가산점인 무도 분야 자격증(단증)은 신체·체력·적성 검사일('25. 9. 12.)까지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자격증(단증)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 다. 최종시험 예정일(면접시험 마지막 날: '25. 12. 5.)까지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해당하거나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 라. 단계별 시험 당일 응시표와 신분증(하단의 인정·불인정 신분증 참고)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시험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인정 신분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주민번호가 인쇄된 장애인 등록증, 기간만료 전 여권*

* 신형·구형 불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은 불가. 다만, 여권정보 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를 함께 소지한 경우에만 인정

▶ **(불인정 신분증)**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여권정보 증명서 없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만 소지한 경우

* 모바일 신분증은 반입이 금지된 전자기기에서 현출 되므로 인정 불가

- 마. 시험일정 등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바. 공고한 일시·장소에 늦게 도착한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 불가하니 시간 엄수 바랍니다.
- 사. 시험장 내 소란을 피우는 등 시험에 방해를 주는 행동을 한 경우 감독관은 이를 제지할 수 있습니다.
- 아. 이 시험계획(일정, 장소 등)은 다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최소 일주일에 1회)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접속해서 갱신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기시험 유의사항

- 가. 시험당일 08:30까지 해당 시험교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늦게 도착한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시간 엄수 바랍니다.
- 나.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연령, 가산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에 의해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붙임 1] 참조

- 다. 답안카드 기재 및 마킹 시에는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 수정은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제공 받은 수정테이프만을 사용

하여 수정 가능하며, 수정테이프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여 정정하였을 경우 해당 문제의 답을 무효처리합니다.

라. 응시자는 답안 작성 시 반드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답안지 교체는 시험종료 전까지 가능하나 시험종료 타종이 울리면 답안 작성을 즉시 멈추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속 작성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필기시험 응시자는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통신 기능(블루투스 등)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 전자기기는 반드시 전원을 OFF하여 가방에 넣어야 하며 시험 도중 휴대폰 등 전자기기에서 벨·알람·진동 등이 있는 때에는 확인 과정을 거쳐 특이사항이 존재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아. 모든 전자기기·모자·방석·무릎담요·커블체어·교과서·노트·연습장·참고서는 가방에 넣어 시험실 밖(복도 등)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돋보기·귀마개(이어플러그) 등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필요한 물품은 시험실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야 소지·사용 가능합니다.

시험 중 소지·사용 가능 물품

1) 신분증, 응시표, 개인 필기도구, 수정테이프,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 귀마개 * (이어플러그)

* 귀마개는 스펀지 형태로 된 것에 한하며, 귓구멍을 막기에 적절한 크기만 허용 (크기가 과도한 귀마개는 불허)

2) 문제집, 기본서, 요약집, 노트, 법전, 연습장 등 수험자료의 경우 시험장 반입은 가능하나 시험 시작 전 가방 등에 넣어 시험장 밖(복도 등)에 보관해야하며, 시험 중 소지·휴대가 확인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

자. 귀마개 착용으로 인해 시험감독관의 종료시간 예고, 타종 소리 등을 듣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차.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 감독관의 시험 종료시간 예고,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해서 본인의 시계로 시험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 답안지 교체는 시험종료 전까지 가능하나 시험종료 타종이 울리면 답안 작성을 즉시 멈추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속 작성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 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 시험시간 중에는 각 교시별 1회에 한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 섭취를 자제하여 주시고 다음의 사용원칙과 절차 등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사용 원칙과 절차

<사용 원칙>

1. 사용 시간: 시험시작 30분 후 ~ 시험종료 20분 전
※ 1교시: 09:40~10:10, 2교시: 11:30~12:40(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
2. 사용횟수: 1인당 1회에 한함

<사용 절차> (소음 주의)

1. 시험 중 손을 들어 화장실 사용 요청
※ 화장실 사용자가 많은 경우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2. 문제지와 답안지를 뒤집은 후 복도로 이동, 복도감독관과 동행하여 이동
3. 응시자 소지품 검사(동성 복도감독관이 실시)
 - ① 주머니를 뒤집어 감독관에게 보여 줌
 - ② 휴대용스캐너(MD)를 이용하여 전자기기 검사 실시
4. 복도감독관이 지정한 화장실 및 용변 칸 사용
5. 화장실 사용 후 복도감독관이 소지품 검사 재실시
6. 복도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시험실 입실

<유의 사항>

1. 사용 시간대 외 및 제한 횟수를 초과하여 화장실 사용 시 재입실 불가 (관리본부 대기)
2. 시험 관련 자료 등 소지, 화장실 내 시험 관련 내용 기재 등의 경우 부정행위로 적발
3. 시험 중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은 본인 좌석에서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10:10:59, 12:40:59에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한 경우 화장실 사용 및 재입실 가능

시험 중 퇴실 시 조치

- 가. 응시자는 답안기재가 끝났더라도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무단이탈한 응시자는 이탈 시점부터 시험 응시를 금지하고, 당해 시험 성적은 무효 처리됩니다.
- 나. 화장실을 허용된 사용 시간대가 아님에도 사용하거나, 사용 제한 횟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시험실에 재입실할 수 없고,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상태로 시험관리본부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 다. 필기시험이 진행되는 도중 시험실을 퇴실하였더라도 긴급 병원후송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시험장(학교 등) 밖으로 퇴거할 수 없으며,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 상태로 해당 교시 종료 시까지 시험관리본부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체력검사 유의사항

가. 체력검사는 ‘순환식 체력검사’로 실시합니다.

※ [붙임 6] 순환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참조

나. 금지약물의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 합격 사례를 방지하고자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다.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체력시험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라. 체력검사 시 부상 방지를 위해, 시험실시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경찰대학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체력검사 이전이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시험 연기 또는 추가 시행은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체력검사 중 판정관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정확한 파울 판정 등 공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영상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 촬영 영상은 △시험 규정 위반 이의제기 신청 시 비디오 영상으로 재판정 △장비 오작동·고장 시 기록 측정 △다수가 참가하는 달리기 종목에서 응시자 식별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신체검사 유의사항

- 가.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나. 신체검사의 적격성 확인을 위해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 '25년부터 약물검사가 대표 마약 6종 검사로 확대 시행되므로,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중 개선된 마약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만 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체검사서는 신체·체력·적성검사 종료일(9. 12.)까지 유효해야 되며, [붙임 5]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가능 병원 참조

- 라. 응시자 본인이 직접 검사 예약한 후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신체검사 결과지를 정해진 기일 내에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 시 신분증 및 응시표, 사진, 검사 비용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마. 몸에 부착된 테이핑은 신체검사 전에 제거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바. 색각 이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색각경 검사(일명 아노말로스코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가능 병원에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기 바랍니다.

* [붙임 12] 색각 관련 정밀검사 병원 안내문 참조

- 사. 문신을 이유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서 판정보류를 받거나 문신을 자진 신고한 응시자는 신체·적성검사 당일 사전조사서(사진 촬영 포함) 작성 후 외부위원을 포함한 '신체검사 심사위원회'(별도 일시 지정)를 구성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 아. 신체검사서는 반드시 검사를 시행한 병원의 압인 또는 계인, 담당 의사 및 검진기관의 장의 서명 또는 인장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자. 신체검사서는 반드시 검사를 시행한 병원에서 봉인상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임의 개봉 시 불인정)

취업지원대상자 유의사항

-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이 취업지원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 나. 인터넷 원서접수 시 보훈번호 및 가산점을 입력해야만 인정됩니다.
※ 보훈번호 및 가산점을 잘못 기재 또는 누락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귀책 사유
- 다.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은 단계별 시험마다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후 단계별 시험마다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마.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채용분야 시·도 경찰청별 채용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바.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지청 등(☎ 1577-0606)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 가. 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의 제한 대상자 및 임용결격자 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나. 시험 일정, 서류제출, 공고문 문언 해석 등 채용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은 경찰대학 인재선발계(☎ 041-968-25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응시자격요건에 관한 문의 시 문언 해석만 가능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응시자격요건 충족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결정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①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 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신설 2015. 10. 20., 2024. 8. 13.>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자격정지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제1항 [별표5]

구 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 (色覺)	<p>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 약도는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색맹 또는 색약(色弱, 약도는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p> <p>1) 영 별표 1에 따른 감식 부분에 근무할 사람에 대한 신규채용시험 2) 경찰특공대에 근무할 사람에 대한 신규채용시험</p>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압	<p>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p>
사시 (斜視)	복시(複視: 겹보임)가 없어야 한다. 다만, 안과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신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p>[비고]</p> <p>1. 위 표의 "체격" 항목 중 "약물검사", "직무에 적합한 신체"와 "문신"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한다</p> <p>2. 위 표의 "색각" 검사 시 응시자는 색각 교정 기구를 사용할 수 없다.</p>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 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

평가 항목	내 용	신체검사 기준(불합격 판정기준)	
직무에 적합한 신체	팔다리와 손·발가락	팔다리와 손·발가락이 강직, 절단 또는 변형된 기형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경찰 장비 및 장구 사용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다는 진단을 받지 못한 사람	
	척추만곡증 (허리 휘는 증상)	X-RAY촬영 결과 20도 이상 허리가 기울어져 있는 자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상지관절의 정상 여부	상지 3대 관절(손목·팔꿈치·어깨관절)을 앞과 위 아래로 이동 시 자연스럽게 않은 사람 중 상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관절의 기능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하지관절의 정상 여부	하지 3대 관절(발목·무릎·고관절)을 좌우로 돌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않은 사람 중 하지의 3대 관절이 불안정하거나 관절의 기능 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약물 검사	약물(마약류) 종류	필로폰(MA), 대마(THC), 케타민(Ketamine), 엑스터시(MDMA), 코카인(COC), 아편(OPI)의 검출	
문신	내 용	혐오성	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폭력적·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
		음란성	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
		차별성	특정 인종·종교·성별·국적·정치적 신념 등에 대한 차별적 내용
		기 타	범죄단체 상징 및 범죄를 야기·도발할 수 있거나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
	노출 여부	모든 종류의 경찰 제복(성하복 포함)을 착용하였을 경우 외부에 노출되어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 (얼굴, 목, 팔, 다리 등 포함)	

[비고]

위 신체검사 기준(불합격 판정 기준) 중에서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본다.

(앞쪽)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3.5cm × 4.5cm)

※ 압인 또는 계인

① 시험실시기관	② 응시분야	응시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검 사 내 용

키	cm	체 중	kg
허리둘레	cm	흉 위 [특수부서 채용시 측정]	cm
(교정)시력 [특수부서 채용시 나안 측정]	좌:() 우:()	색 각	청 력
종 양 질 환		이 비 인 후 질 환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 장 / 비 뇨 기 계 질 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 골 격 계 질 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 부 X 선 검 사	
직무에 적합한 신체 문 신		사 시	

약 물 검 사

필로폰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아편
-----	----	-----	------	-----	----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합 격 []판 정 보 류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4월
------	----------

210mm × 297mm [백상지(80g/㎡)]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가. ①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경찰청, 서울경찰청, 경찰대학 등)
 - 나. ②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순경 공채, 경위 공채, 경장 경채 등)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걸침도장)을 해야 합니다.
2. 나안(裸眼)과 흉위(가슴둘레)는 특수부서 채용 시에만 측정합니다.
3.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나. 임신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신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4.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에 해당하지 않음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만성골수성백혈병' 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5.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및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연번	병원명	시도	주소	전화번호
1	경희의료원	서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회기동)	02-958-8988
2	경찰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가락동)	02-3400-1802
3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을지로6가)	02-2276-2355
4	미즈메디병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295, (내발산동)	02-2007-1237
5	부민병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89, (등촌동)	1577-7582
6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신내동)	02-2276-7158
7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신대방동)	02-870-2039
8	성애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3길 22, (신길동)	02-840-7383
9	씨엠병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36길 13, (영등포동4가)	070-4698-7888
10	청구성심병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873, (갈현동)	02-350-3281
11	동신병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72, (홍은동)	02-396-9161
12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36, (신림동)	02-1877-8875
13	한일병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 308, (쌍문동)	02-901-3114
14	이화의대부속서울병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60, (마곡동)	02-6986-2330
15	희명병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244, (시흥동)	02-6712-0133
16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 262, (암남동)	051-990-6697
17	동아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동대신동3가)	051-240-5310
18	대동병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총렬대로 187, (명륜동)	051-550-9300
19	동래봉생병원		부산광역시 동래구 안연로109번길 27, (안락동)	051-520-5850
20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거제동)	051-607-2179
21	영도병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85, (대교동2가)	051-419-7746
22	온종합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19, (당감동)	051-607-0784
23	좋은강안병원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93, (남천동)	051-610-9873
24	부민병원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59, (덕천동)	051-330-3078
25	해운대부민병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84, (우동)	051-602-8130
26	해동병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133, (봉래동3가)	051-410-6600
27	좋은삼선병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326, (주례동)	051-310-9587
28	봉생기념병원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401, (좌천동)	051-664-4054
29	좋은문화병원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119, (범일동)	051-630-0990
30	학교법인 춘해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05, (범천동)	051-608-0270~1
31	학교법인 동의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로 62, (양정동)	051-850-8763	
32	부산보훈병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 (주례동)	051-601-6219	
33	경북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삼덕동2가)	053-200-5114
34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 (대명동)	053-650-3000

연번	병원명	시도	주소	전화번호
35	영남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 (대명동)	053-623-8001
36	천주성삼병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3190, (신매동)	053-790-1000
37	강남종합병원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207, (방촌동)	053-980-9000
38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 (신당동)	053-258-4171
39	나사렛종합병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97, (진천동)	053-643-1400
40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440, (읍내동)	053-320-2500
41	대구의료원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 (중리동)	053-560-7575
42	대구파티마병원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9, (신암동)	053-1688-7770
43	드림종합병원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153, (대명동)	053-640-8800
44	대구보훈병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60, (도원동)	053-630-7000
45	나사렛국제병원	인천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98, (동춘동)	032-899-9999
46	부평세림병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75, (청천동)	032-524-0591
47	비에스종합병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충렬사로 31-0	032-290-0321
48	인천사랑병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726-0	032-457-2000
49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217	032-580-6000
50	인천세종병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20, (작전동)	032-240-8000
51	인천적십자병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032-899-4000
52	인천힘찬종합병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72-0	032-1899-2220
53	현대유비스병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503-0	032-888-7575
54	KS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 220, (수완동)	062-975-9314
55	광주기독병원	광주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로 37, (양림동)	062-650-5572
56	광주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면양로139번길 51, (두암동)	062-260-7356
57	광주보훈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산월동)	062-602-6301
58	광주센트럴병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 6-0, (신가동)	062-950-9797
59	광주일곡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양일로 309, (일곡동)	062-608-7575
60	광주한국병원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223, (쌍촌동)	062-380-3050
61	상무병원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81-7, (치평동)	062-600-7224
62	서광병원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59번길 6, (금호동)	062-600-8060
63	운암한국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91, (운암동)	062-608-8232
64	건양대학교병원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로 158, (관저동)	042-600-9999
65	충남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대사동)	042-280-8535
66	대전성모병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64, (대흥동)	042-220-9896
67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95, (둔산동)	042-611-3763
68	대전보훈병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82번길 147, (신탄진동)	042-939-0427
69	울산대학교병원	울산	울산광역시 동구 대학병원로 25, (전하동)	052-250-8340
70	서울산보람병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읍 중평로 53,	052-255-7145

연번	병원명	시도	주소	전화번호
71	울산병원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171번길 13, (신정동)	052-259-5264
72	울산엘리아병원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285, (호계동)	052-290-2230
73	동강병원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 239, (태화동)	052-241-1471
74	동천동강병원		울산광역시 중구 외솔큰길 215, (남외동)	052-702-3550
75	울산시티병원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07, (연암동)	052-280-9200
76	좋은삼정병원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51, (무거동)	052-220-7679
77	중앙병원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72, (신정동)	052-226-1886
78	엔케이세종병원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61, (나성동)	044-850-7700
79	고대의대부속안산병원	경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고잔동)	031-412-4296
80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원천동)	1688-2118(2번)
81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 (지동)	031-249-8249
82	강남병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11, (신갈동)	031-300-0123
83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 (정자동)	031-888-0786
84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 안성시 남파로 95, (당왕동)	031-8046-5131
85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경기도 이천시 경충대로 2742, (관고동)	031-630-4259
86	광명성애병원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36, (철산동)	02-2680-7385
87	뉴대성병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91, (심곡동)	032-610-1165
88	대아의료재단한도병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로 103, (선부동)	031-8040-1339
89	성남시의료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71번길 10, (태평동)	031-738-7007
90	성남중앙병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476번길 12, (금광동)	031-799-5550, 5551
91	안성성모병원		경기도 안성시 시장길 58, (서인동)	031-675-6007
92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1, (산본동)	031-390-2741, 2725,2726
93	시화병원		경기도 시흥시 군자천로 381, (정왕동)	031-5189-0293
94	동수원병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 (우만동)	031-210-0285
95	화흥병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90번길 98, (호매실동)	031-8021-6858
96	단원병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20, (초지동)	031-8040-5860
97	다니엘종합병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361, (약대동)	032-670-0230
98	굿모닝병원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38, (합정동)	031-5182-7649
99	김포우리병원		경기도 김포시 감암로 11, (걸포동)	031-999-1345
100	뉴고려병원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3로 283, (장기동)	031-980-9114
101	사랑의병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69, (성포동)	031-8084-0918
102	메트로병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33번길 8, (안양동)	031-467-9984
103	조은오산병원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307, (오산동)	031-373-1806
104	차의과학대분당차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 (야탑동)	031-780-5050
105	안양샘병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9, (안양동)	031-463-4386
106	지샘병원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591, (당동)	031-389-3446

연번	병원명	시도	주소	전화번호
107	가톨릭대의정부성모병원	경기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 271, (금오동)	031-820-5334
108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142, (의정부동)	031-828-5000
109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1648, (신읍동)	031-539-9114
110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백석동)	1577-0013
111	의정부백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금신로 322, (신곡동)	031-856-8111
112	현대병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21, (진접읍)	031-528-9117
113	연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일산로 20-0, (일산동)	033-741-1670
114	강원대학교병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백령로 156, (효자동)	033-258-2000
115	강릉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007, (남문동)	033-610-1281
116	속초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영랑호반길 3, (영랑동)	033-630-6109
117	영월의료원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1로 59, (영월읍)	033-370-9124
118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하평로 11, (평릉동)	033-530-3100
119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드미길 8, (장성동)	033-580-3151
120	강릉고려병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옥가로 30	033-649-0206
121	충북대학교병원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0	043-269-6566
122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충청북도 충주시 국원대로 82-0	043-840-8401
123	중앙제일병원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로 36-0	043-533-1719
124	제천서울병원		충청북도 제천시 송문로 57-0	043-642-7725
125	효성병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 16-0	043-225-8522
126	옥천성모병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성왕로 1195-0	043-730-7072
127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0	043-249-2210
128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충청북도 충주시 안림로 239-50	043-871-0246
129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안서동)	041-550-6789
130	서산중앙병원		충청남도 서산시 수석산업로 5, (수석동)	041-661-1063
131	의료법인 백제병원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94번길 14, (취암동)	041-730-8985~6
132	보령아산병원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136, (죽정동)	041-930-5555
133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77, (웅진동)	041-962-1231
134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충청남도 서산시 중앙로 149, (석림동)	041-689-7000
135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홍성읍)	041-630-6177
136	대자인병원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90, (우아동3가)	063-240-2000
137	동군산병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로 149, (조촌동)	063-440-0300
138	전주병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한두평3길 13, (중화산동2가)	063-220-7200
139	익산병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 969, (신동)	063-840-9114
140	정읍아산병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충정로 606-22, (용계동)	063-530-6000
141	예수병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중화산동1가)	063-230-8114
142	군산의료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의료원로 27, (지곡동)	063-472-5000

연번	병원명	시도	주소	전화번호
143	남원의료원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충정로 365, (고죽동)	063-620-1114
144	전주고려병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367, (산정동)	063-240-7300
145	광양사랑병원	전남	전라남도 광양시 공영로 71, (중동)	061-797-7240
146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1길 24, (조례동)	061-720-7133
147	나주종합병원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로 5419, 나주종합병원	061-330-6136
148	목포시의료원		전라남도 목포시 이로로 18, (용해동)	061-260-6472
149	빛가람종합병원		전라남도 나주시 정보화길 49-0, (빛가람동)	061-820-0855
150	여수전남병원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49, (광무동)	061-640-7157
151	여천전남병원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95, (선원동)	061-690-6284
152	영광종합병원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3, (영광읍)	061-350-8196
153	영광기독병원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265, (영광읍)	061-350-3038
154	무안병원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몽탄로 65, (무안읍)	061-450-3134
155	목포중앙병원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23, (석현동)	061-280-3000
156	순천제일병원		전라남도 순천시 기적의도서관1길 3, (조례동)	061-720-3406
157	세안종합병원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795-2, (연산동)	061-260-6600
158	해남종합병원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5, (해남읍)	061-530-0131
159	광양서울병원		전라남도 광양시 진등길 93, (마동)	061-798-9896
160	해남우리종합병원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97, (옥천면)	061-530-7171
161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2길 55, (북문동)	054-850-6000
162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 (용흥동)	054-247-0551
163	동국대의과대학경주병원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석장동)	054-748-9300
164	상주적십자병원		경상북도 상주시 상서문로 53, (남성동)	054-534-3501
165	안동성소병원		경상북도 안동시 서동문로 99, (금곡동)	054-850-8114
166	영주적십자병원		경상북도 영주시 대학로 327-0	054-630-0100
167	김천제일병원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1길 12, (신음동)	054-420-9300
168	문경제일병원		경상북도 문경시 당교3길 25, (모전동)	054-550-7700
169	상주성모병원		경상북도 상주시 냉림서성길 7, (냉림동)	054-532-5001
170	의료법인 안동병원		경상북도 안동시 양실로 11, (수상동)	054-840-1004
171	포항세명기독병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 (대도동)	054-275-0005
172	차의과학대학부속구미차병원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10길 12, (형곡동)	054-450-9700
173	포항성모병원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 (대잠동)	054-272-0151
174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남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물금읍)
175	강일병원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359, (구산동)		055-822-0100
176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21, (중앙동)		055-280-7619
177	베데스다복음병원	경상남도 양산시 신기로 28, (신기동)		055-384-9901

연번	병원명	시도	주소	전화번호
178	연세에스병원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32번길 13, (이동)	055-548-7700
179	의료법인 거봉 백병원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5길 14, (상동동)	055-733-0000
180	맑은샘병원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거제대로 4477, (연초면)	055-731-1240
181	갑을장유병원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167-13, (부곡동)	055-310-6000
182	김해복음병원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 33, (삼정동)	055-330-8888
183	청아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천서로 67	055-230-1500
184	에스엠지연세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76, (월남동2가)	055-243-0100
185	조은금강병원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1814-37, (삼계동)	055-330-0300
186	제일병원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885, (강남동)	055-750-7123
187	진주고려병원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2, (칠암동)	055-751-2500
188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 (성주동)	055-214-2000
189	창원파티마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 (명서동)	055-270-1000
190	창원한마음병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57번길 8, (사림동)	055-225-0000
191	한일병원		경상남도 진주시 범골로 17, (충무공동)	055-759-7777
192	중앙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91-0	064-786-7280
193	한국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93, (삼도일동)	064-750-0720
194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아라일동)	064-717-1608
195	서귀포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수로 47, (동홍동)	064-730-3029
196	제주한라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 (연동)	064-740-5298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34조의2 제2항 제2호 관련

1. 평가 종목

순환식 체력검사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4.2킬로그램의 조끼를 착용하고 다음 각 목의 종목을 연이어 수행한 후 그 완주시간을 측정하는 검사를 말한다.(그림 참조)

- 가. "장애물코스 달리기"는 매트(1.5미터 길이) 넘기, 허들(0.6미터 높이) 넘기, 계단 오르내리기(5단 계단), 장벽(1.5미터 높이) 넘기(2회 순환 시에만 수행)로 구성된 코스를 6회 반복하여 총 340미터를 달리는 종목
- 나. "장대 허들 넘기"는 엎드린 상태에서 일어나 장대 허들(0.9미터 높이)에 손을 짚고 넘은 후 뒤로 눕기를 3회 반복하는 종목
- 다. "당기기·밀기"는 신체저항성 기구(32킬로그램)를 각각 당긴 상태와 밀 상태로 반원을 그리면서 이동하기를 각각 3회 수행하는 종목
- 라. "구조하기"는 모형인형(72킬로그램)을 잡고 당겨서 10.7미터 거리를 이동시키는 종목
- 마. "방아쇠당기기"는 원형으로 구멍(지름 23센티미터)이 뚫려있는 전방 구조물의 원안에 총구를 넣고 주로 사용하는 손은 16회, 반대쪽 손은 15회씩 방아쇠를 당기는 종목

2. 평가 기준

제1호 각 목에 따른 종목의 완주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한 등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완주시간은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초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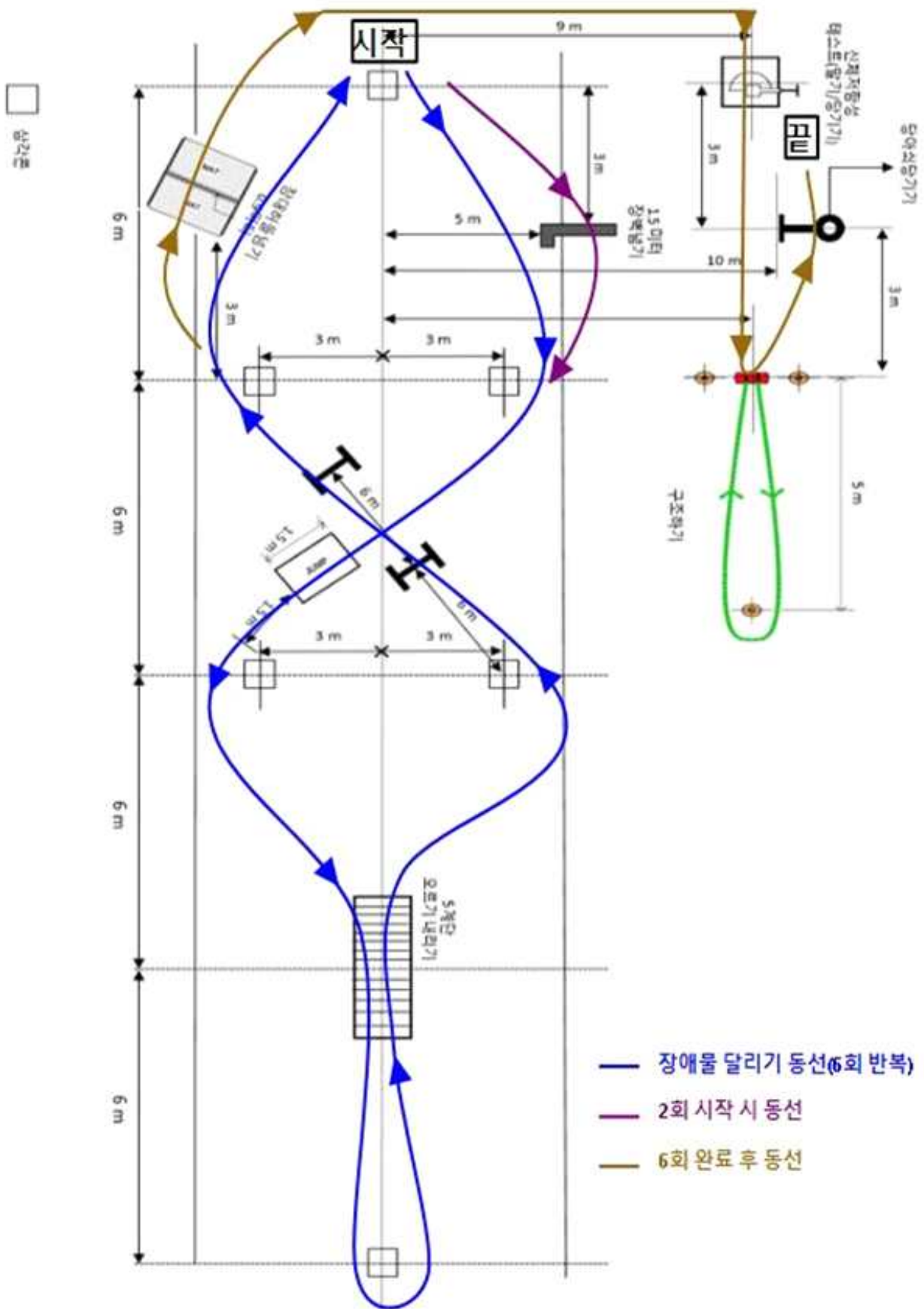
- 가. 완주시간이 4분 40초 이하인 경우: 우수 등급
- 나. 완주시간이 4분 40초를 초과하고 5분 10초 이하인 경우: 보통 등급
- 다. 완주시간이 5분 10초를 초과한 경우: 미흡 등급

3. 평가 방법

가. 제2호 각 목의 평가등급에 따른 합격 여부는 다음 1)과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영 제43조의3에 따라 어느 한 성(性)을 초과하여 합격시키는 경우에는 보통 등급에 속하는 해당 성의 응시자 중 완주시간에 따른 선순위자를 우수 등급을 받은 인원과 합산한 후 해당 성의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 1) 우수 등급을 받은 사람: 합격
- 2) 보통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사람: 불합격
- 나. 그 밖에 체력검사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그림] 순환식 체력검사 수행 동선



4. 측정 및 수행 방법

<p>장애물코스 달리기 (340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자형으로 설치된 콘을 따라서 이동하며, 콘을 건드린 경우 콘을 원상태로 둔 후 진행 ▪ 매트(1.5m) 넘기의 경우 매트를 넘지 못하거나 라인을 밟으면 안되며, 성공할 때까지 매트 넘기 다시 진행 ▪ 계단 오르기(5단)는 한발에 1계단씩 오르내리고 2계단 이상 오르내리면 안되며, 성공할 때까지 계단오르기 다시 진행 ※ 2계단씩 올라간 경우 바닥으로 내려와서 다시 진행, 2계단씩 내려간 경우 계단 정상에서 다시 진행 ▪ 허들 넘기(0.6m)의 경우 장애물 바를 떨어뜨리지 않고 뛰어넘으며 바가 떨어질 경우 원래 상태로 정위치 한 후 성공할 때까지 첫번째 장애물 바로 돌아와 다시 진행 ▪ 장벽 넘기(1.5m)는 1회 코스 완료 후 2회 코스 시작 후 1회만 넘으면 되고 장벽의 측면 지지대를 이용하여 넘어서는 안되며, 성공할 때까지 장벽넘기 다시 진행
<p>장대허들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엎드렸다가 일어나 장대 허들(0.9m)에 손을 짚고 넘은 후 뒤로 눕기'를 3회 왕복 ▪ 엎드릴 시 가슴·앞쪽 허벅지, 뒤로 누울 시 등 전체·엉덩이가 정확히 바닥에 닿아야 횡수로 인정되며, 감독관이 왕복 3회를 인정할 때까지 계속 진행하고, 미인정시 해당 동작부터 다시 진행
<p>당기기·밀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 제작된 신체 저항성 기구(32Kg)를 완전히 당기거나 민 상태로 반원(180도)을 그리면서 이동하며, 순서는 당기기부터 3회 실시한 후 연이어 밀기 3회 실시 ▪ 당기고 미는 도중에 신체 저항성 기구에 빨간색이 표시되면 실패로 처리되고 해당 동작(밀기를 실패했다면 밀기부터)을 다시 진행 ▪ 해당 동작을 각각 3회 연속으로 수행해야 성공으로 인정
<p>구조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형 인형(72kg)에 설치된 줄을 잡고 10.7m 거리를 당겨서 모형 인형 전체가 도착 라인 안으로 들어와야 성공으로 인정
<p>방아쇠당기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경 23cm의 원 안에 권총을 넣고 방아쇠 당기기를 주 사용손부터 16회 실시한 후 연이어 반대손 15회 실시 ▪ 원 안으로 총구가 들어가지 않거나 구조물에 닿을 경우 해당 손의 기록은 무효 처리되며, 해당 손부터 재측정을 진행하여 감독관이 인정할 때까지 진행

※ 비고

- 측정 감독관이 종목별로 다음 단계 진행이 어렵다고 판정(응시자 측정 포기, 부상을 당한 경우, 진행시간 6분 초과 등)할 경우 실격 처리할 수 있다.
- 기기 오작동·미작동으로 측정기록에 오류 발생 시 재측정 기회 제공
- 기록원(검사관)은 측정요원으로부터 전광판의 기록 또는 초시계의 기록을 전달받아 정확히 기록 및 서명 날인

I. 금지약물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¹⁾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 | | |
|--|---------------|
|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
| ▶ drostanolone | ▶ methenolone |
| ▶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
| ▶ stanozolol | |
| ▶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 |
|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
| ▶ testosterone | |

나. 기타 동화작용제: Clenbuterol

2. 이뇨제: 총 3종

- | | | |
|-----------------------|------------------|--------------|
| ▶ hydrochlorothiazide | ▶ chlorothiazide | ▶ furosemide |
|-----------------------|------------------|--------------|

3. 흥분제: 총 3종

- | | |
|---|-------------|
| ▶ methylhexanamine(dimethylpentylamine) | |
| ▶ methylephedrine | ▶ ephedrine |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

4. 마약류: 총 11종

- | | | |
|------------------|------------------|-----------------------|
| ▶ Buprenorphine | ▶ dextromoramide | ▶ diamorphine(heroin) |
| ▶ fentanyl 및 유도체 | ▶ hydromorphone | ▶ methadone |
| ▶ morphine | ▶ oxycodone | ▶ oxymorphone |
| ▶ pentazocine | ▶ pethidine | |

II. 금지방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경찰청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6호 관련,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한 약물 및 방법은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대상자는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로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 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를 **원서접수 시** 하여야 하며, **동시에 체크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명: _____	2. 성별: 여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3. 생년월일: _____	4. 응시번호: _____
5. 핸드폰: _____	6. 이메일: _____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

※ 진단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input type="checkbox"/> 응급 <input type="checkbox"/> 기간(주/월) _____
--------------------------------	--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_____ 전공분야: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이메일: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 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_____ 날짜: _____

부모/보호자 서명: _____ 날짜: _____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 **마약류 정밀검사 시행안내**

- 경찰공무원은 마약수사의 주체가 되는 공무원이고,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적 기준이 요구되므로 마약 복용은 금지되며, 경찰청장은 채용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마약류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별표1 관련, 필로폰(MA), 대마(THC), 케타민(Ketamine), 엑스터시(MDMA), 코카인(COC), 아편(OPI, 모르핀)의 복용은 금지됩니다.
- 마약류 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 **정밀검사 대상자 선정방식**

- 마약진단키트를 이용하여 응시자의 소변을 간이검사한 결과 양성반응이 나온 경우

□ **정밀검사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는 곧바로 병원 또는 임상검사 전문기관에서 간이검사가 실시되며, 간이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정밀검사 기관으로 전달됩니다.
- 정밀검사 결과는 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통보받은 후 10일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장 등 시험주관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정밀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통보 받은날로부터 10일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마약 간이검사 시 기침약 등으로 인해 마약류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양성으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검사 전 치료용 약물 복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병원 신체 검사 시 정밀 마약검사 의뢰에 동의하여야 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시험 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밀 마약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으나, 응시자가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면책 신청이 불승인된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명: _____	2. 성별: 여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3. 생년월일: _____	4. 응시번호: _____
5. 핸드폰: _____	6. 이메일: _____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

※ 진단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input type="checkbox"/> 응급 <input type="checkbox"/> 기간(주/월) _____
--------------------------------	--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_____ 전공분야: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이메일: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 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_____ 날짜: _____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오.

□ **색각경(아노말로스코프) 검사 가능 병원: 8개소**

연번	병원명	주 소	전화번호
1	경찰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02-3400-1269
2	공안과 병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37길 45	02-480-5000
3	공안과 의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02-733-5111
4	바른눈서울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02-6203-3377
5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	032-890-2114
6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길 82	031-787-2114
7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20	055-360-1255
8	정근안과병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67	051-668-8000

- 색각 이상자의 경우, 위 병원에서 색각경 검사(일명 아노말로스코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가능 병원(196개소)에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또한, 위 명시한 의료기관 외에 색각경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이라면 색각 관련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별표 2의 3

분야	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1점	2점
무도	무도 2·3단	무도 4단 이상

[비 고]

1. 무도 분야 자격증 점수 계산

가. 계산 기준

무도 분야 자격증 2·3단은 1점을, 4단 이상은 2점으로 계산한다.

나. 자격증 인정 기준

무도 분야 자격증은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1) 대한체육회에 가입한 정회원 또는 준회원 경기단체
- 2) 법인으로서는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두고, 각 지부당 소속 도장 10개 이상이며,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
- 3)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2)**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가라테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씨름협회	대한레슬링협회

※ 「대한크라쉬연맹」은 '23. 12. 3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56)**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극협회
대한삼보연맹	경찰무도교육원	대한민국특공무술중앙협회
대한삼단봉협회	대한프로복싱협회	세계프로킥복싱무에타이총연맹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대한민국경찰무도연맹	대한이종격투기연맹
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	대한크라브마가협회	

※ △ 대한국술합기도협회 △ 대한합기도연합회 △ 대한합기도유술협회 △ 세계태권무도연맹 △ 한국해동검도연합회 △ K3세계국무도총연맹 △ 대한민국합기도협회 △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는 '25. 2. 6.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

택견보존회

※ 무도단체 일괄점검 결과에 따라 단체 현황은 '25년 하반기 추가 변동될 수 있음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3조의3(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 ① 시험실시권자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대상)

- ① 영 제43조의3이 적용되는 시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직무분야별 또는 시·도경찰청별 선발 예정이 5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1. 경위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 2. 영 제16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 ② 제1항의 시험에 적용되는 채용목표인원은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15퍼센트를 곱한 인원수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양성평등채용목표제 합격자 결정)

제3조의2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 1. 제2차시험(체력검사)에서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보통”등급에 속하는 해당 성 응시자 중 빠른 시간 순으로 “우수”등급을 받은 인원수와 합산하여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 2. 제3차 및 제4차시험(필기시험)에서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목에 따른 득점을 하고 총득점에서 합격선의 -3퍼센트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 가.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은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 나. 영 제16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 시험은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 3. 제6차시험(면접시험)에서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퍼센트 이상(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는 불합격)을 득점하고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총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자로 결정한다.
- 4. 최종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성적 순으로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목표인원에 달할 때까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 5. 시험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을 추가 선발하였더라도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 6. 시험단계별 추가합격선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모두 합격자로 한다.

누구든지 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